

#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건설현장 주체들의 불법행위(공정지연, 업무방해 등)가 지속됨에 따라 시공자에게 불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(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023년 6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2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발주청, 건설사업관리기술인, 시공자, 설계자의 기본임무)</p> <p>①, ② 생 략</p> <p>③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시공자"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<u>한다</u>.</p>	<p>제10조(발주청, 건설사업관리기술인, 시공자, 설계자의 기본임무)</p> <p>①,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시공자"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<u>하며,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</u>.</p>